

은행업감독규정(개정)

1 신청사유 (은행과, 2022.12.1.)

- (개정 내용)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,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12종을 예대출 산정에서 제외
- (신청 사항)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 기간을 단축할 필요

2 검토 내용

- '22.10.27일 금융위·금감원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「예대출 규제 유연화 조치」, '22.11.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에 따른 절차로  
- 국민의 권리·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, 금융시장 안정 등 신속한 개정을 통한 실익이 있으므로 사전예고기간 단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

※ 「금융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등에 따라 금융위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사전예고가 원칙이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, 생략·단축도 가능(동 규정 제20조제3항)

3 처리 의견

- 사전예고 기간 : '22.12.2일~12.12일 (10일간)